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1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원활한 계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계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5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6. 15.~7. 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박기은 (☎2133-7215)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5조의4(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까지</u> -----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주택정책실 재정비축진사업과 박기은 (☎2133-7215)